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23 선고 2021가단631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B

소송대리인 C, D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9. 8. 19.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67,763,07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763,0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0. 및 2013. 5. 16.경 주식회사 E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주식회사 E의 채무에 관한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및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차2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채권자에게,

가. 채무자 주식회사 E은 44,181,464원과 그 중 34,382,484원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1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 중 근보증한도액 39,000,000
원을 지급하고,

다. 채무자 주식회사 E은 277,616,844원과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C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위 다.항 금원 중 근보증한도액
242,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C의 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8.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배우자)와 자녀
G, C, H, I가 있다.

라. 피고와 G, C, H, I는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대구
달성군 J 임야 22,017㎡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C이 망인 생전에 이미 상속분 상당의 재산을 분배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원, 피고 사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므로 그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L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망인은 1999. 2. 12. C에게 대구 달성군 M 대 251㎡, N 대 43㎡, O 전 284㎡를 증여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이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는 203,026,000원 상당이다.
- ② 또한 망인은 C이 2017. 7.경 L조합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③ 한편 망인은 1999. 2. 12. C의 형이자 자신의 장남인 G에게 대구 달성군 P 답 1,478㎡, Q 답 10㎡, R 답 8㎡, S 답 102㎡ 중 망인 소유 지분을 증여하여 주었는바, G이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는 150,000,000원 상당이다.
- ④ 피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는 431,550,650원 상당이고, 대구 달성군 J 임야 22,017㎡는 2019년도 공시지가로 계산시 8,432,511원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망인의 자산 규모나 C 및 G에게 같은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재산을 분배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C, G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의 선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C과 G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결국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시점의 적극재산 가액과 생전증여 가액을 합한 793,009,161원(431,550,650원 + 8,432,511원 + 203,026,000원 + 150,000,000원)에 자신의 법정상속분(2/11)을 곱한 금액인 144,183,483원에서 자신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인데, 부동산 증여 가액만 고려하더라도 이미 구체적 상속분이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C이 피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과 한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별지